

대법원 2007.1.25.선고 2006도6912 판결

【사기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의료법위반교사·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】, [미간행]

【판시사항】

- [1]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,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(적극)
- [2]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
【참조조문】

[1] 형법 제31조 제1항 , 의료법 제70조 / [2]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

【참조판례】

[2]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도1438 판결 (공1999상, 1211)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상 고 인】 피고인 및 검사

【대상판결】

【원심판결】 수원지법 2006. 9. 20. 선고 2004노2667 판결

【주문】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

[이유]

1.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<u>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</u>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.

이와 달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70조 에 따라 그 사용인 등의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및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70조 에 규정한 벌금형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이 너무 무접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2.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, 허위진단서작성,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,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한편,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,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 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,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, 설령 원 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(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) 결국 이 부분 상 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고,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양숭태(재판장)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(주심)